

# 하남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210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. 9. .  
제출자 : 하남시장

## □ 제안사유

-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「하남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 사업」 중 등록자 관리,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교육, 환자 조기발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국가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## □ 관련근거

- 지역보건법 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
-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
-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(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) 및 제13조(위임 및 위탁)
-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(의회 동의 등)
-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위탁운영)

## □ 주요골자

- 위탁자: 하남시장
- 수탁자: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 참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(단체)
- 위탁내용: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

- 위탁기간: 2021. 1. ~ 2023. 12.
- 위탁예산: 350,000천원
  - ※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시에 따라 후년도 위탁예산 변경 가능
- 위탁방법
  - 가.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수탁대상자 공개모집
  - 나.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선정

## □ 위탁시설 현황

- 시설명 :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
- 위치 : 하남시 역말로 71, 1층
- 인력계획 : 7명(센터장 1명, 팀장 1명, 간호사2명, 영양사2명, 행정요원 1명)

## □ 위탁대상 업무내용

- 고혈압·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참여의료기관 연계 및 등록 촉진
- 고혈압·당뇨 등록자 관리 (SMS, ACS, 직접전화)
- 고혈압·당뇨 등록자 교육 및 상담모형 개발
- 지역사회 고혈압·당뇨병환자 관리 및 예방 교육 실시
- 일반 지역주민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(지역캠페인)
- 등록교육센터 내소자 기초건강검진 (키, 체중, 혈압, 혈당)
- 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평가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

## □ 향후 추진계획

- 2020. 9. 하남시 시의회 「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」 동의
- 2020. 10.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모집공고
- 2020. 11. 수탁자 선정 심사 및 결정
- 2017. 12.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공증

## □ 주관부서 검토의견

- 심뇌혈관질환 사망 및 장애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급증하고 있음.
  - ※ 심뇌혈관질환은 전체 사망의 1/4 차지
-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발생 및 조기사망은 선행질환의 관리로 예방이 가능하나 고혈압·당뇨병 등 선행질환 유병율 및 진료비 증가추세
  - ※ 고혈압 유병률 28.0%(‘05) → 32.0%(‘15), 진료비 2.4천억원(‘02) → 3조 3.3천억원(‘18)
  - ※ 당뇨병 유병률 9.1%(‘05) → 10.6%(‘15), 진료비 1.6천억원(‘02) → 2조 4.5천억원(‘18)
- 전문적인 관리 능력을 갖춘 법인(또는 단체)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 전담인력이 지역사회 고혈압·당뇨병 환자 관리, 예방교육, 캠페인, 조기발견사업 등을 일관성 있게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
## □ 참고자료

- 관계법령 발췌서 1부
- 하남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1부(별첨)

□ **지역보건법**

**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**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하거나,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,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(實費)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□ **지역보건법 시행령**

**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**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

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
2.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
3.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
4.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, 실험 또는 검사 업무
5.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업무

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

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보조, 실비보조,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**제7조(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)**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(이하 "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.

1.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,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
2.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
3.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·홍보
4.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
5.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13조(위임 및 위탁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□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라 하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**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**제6조(의회 동의 등)**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 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위탁사무 내용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민간위탁 기간
6. 수탁자 선정방식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8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9.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
10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## □ 하남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·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6조(위탁운영)**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관련 기관·단체
2. 제5조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

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, 위탁기간, 위탁조건,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수탁자 선정)**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기관·단체의 장은 센터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, 장비·시설 및 기술 확보
2. 재정적 부담능력, 관리능력, 공신력
3.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
4.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,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

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「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따른다.